

< 일 러 두 기 >

- 법령명 : 어유 건강식품 규격 표준
- 제정일 : 2007년 12월 24일
- 최종개정일 : 2007년 12월 24일
- 출처 : 대만 전국법규DB (방문일 : 2022년 1월 25일)

어유 건강식품 규격 표준

공포일: 2007년 12월 24일

제1조

본 표준은 건강식품 관리법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한다.

제2조

본 표준을 적용하는 어유 제품(이하 제품)은 전통적인 식용 어류에서 추출한 분말형, 캡슐 혹은 정 제형의 식품이다.

전 항 제품은 가공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항산화제 혹은 부형제 이외에는 단일 조제여야 한다.

제3조

제품의 규격 성분은 하기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:

1. 함유하는 $\omega-3$ 지방산의 순도는 30~50%이어야 한다.
2. 하루 섭취량에 함유되는 $\omega-3$ 지방산은 적어도 1.0g 이상 2.0g 이하여야 한다.

전 항에서 말하는 $\omega-3$ 지방산은 트라이글리세라이드 형식이어야 하며 순도는 에이코사펜타엔산(eicosapentaenoic acid, EPA)과 도코사헥사엔산(docosahexaenoic acid, DHA)의 합으로 계산한다.

제4조

전 조 제1항 규격 성분의 검험방법은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방법을 따른다.

제5조

본 표준은 200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